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73호 2016. 05. 16.(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70호 도로구간 변경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7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 및 1-8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7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 및 소3-5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 2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70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5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6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1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경명대로 401의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5.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5-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46-9, 346-2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401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맹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맹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지구77블럭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05 (왕길동, 에스알마트)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2-6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6번길 13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20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7번안길 40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3-3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63-16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81-1, 87-6, 87-4, 87-3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51 (왕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61-2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길 42 (왕길동)	2008-12-13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17-1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3번길 5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59번길 23-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5. 1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지계획변경)
  - 단독주택용지(A-1 용도)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위 치	면 적(m <sup>2</sup> )				위 치	면 적(m <sup>2</sup> )
A-1	9	7-1	273.3		A-1	9	7-1	261.3
		7-2	332.1				7-2	344.1

※참고 : 획지선 변경(합병 후 분할), 지형도면 참조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70호

##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5. 16.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붙임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b>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div>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주민 의견 수렴 공고</b>                  14일 이상             </div>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b>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div>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div>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b>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div>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고시 및 신청인 통보</b>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b>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div>	동의 만료일부부터 ⇒ 10일 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 <b>공고 및 신청인 통보</b>                  결과 통보             </div>	

※ 「도로명주소법」 제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의견수렴 공고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폐지 조서

연번	위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폐지사유	관할행정구역 (행정동)	비고
			기점	종점							
1	길	봉화로223번안길	금곡동 404-4	금곡동 430-29	60	3	10	19-1 →19-18	금곡동 402번지를 통과하는 도로폐쇄에 따른 도로폐지	검단1동	폐지

□ 도로구간 폐지 도면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6-71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 및 1-8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류68 및 중로1류81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및 1-81호선 도로개설공사 (미개설구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5. 1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류68호선 및 중로1류81호선)
  - 명칭 : 중로1-68호선 및 중로1-81호선 도로개설공사(미개설구간)
3. 사업의 규모
  - 중1-68호선 : L=141.0m, B=20m, A=2,402.4m<sup>2</sup>
  - 중1-81호선 : L=562.5m, B=15m, A=9,940.6m<sup>2</su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총폭	금회	총연장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68	20	20	2,696 (2,004)	2,449 (1,757)	141 (141)	106 (106)	(서구연장)
도로	중로	1	81	20	15	1,190	627.5	562.5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대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좌동	173-181	잡	2,081	2,081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	-	-	
2	가좌동	173-545	잡	988	988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	-	-	
3	가좌동	173-547	장	3,716	3,716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4	가좌동	173-549	잡	5,211	5,211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	
5	가좌동	173-550	잡	347	347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	-	-	
계				12,343	12,343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 참조 (상세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8호선 및 1-81호선) 실시계획인가  
관련 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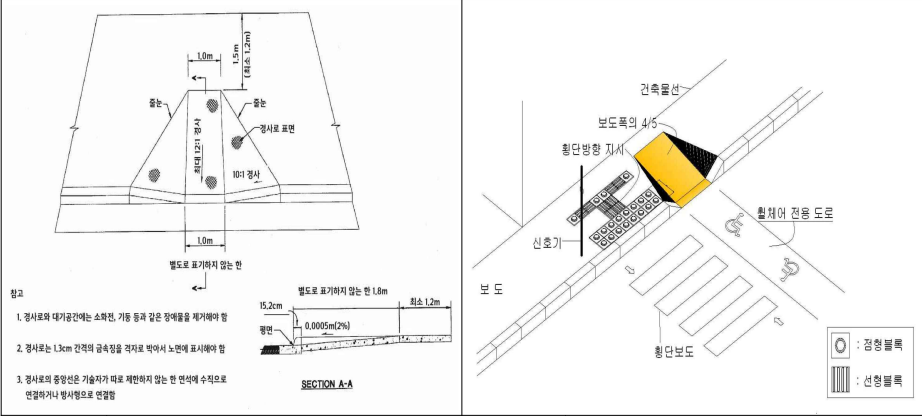
---

**2016 . 05**

**동화엠파크(주)**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68호선 및 1-81호선)실시계획인가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서구청 건설과	무상귀속 (건설 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li> <li>○ 준공 전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지적정리(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후 세목 정리한 공공시설 조서 및 측량도(현황·지적·도식계획),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협의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전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은 지적정리(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후 세목 정리한 공공시설 조서 및 측량도(현황·지적·도시계획),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협의하겠음</li> </ul>	반영																		
	도로시설 (도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로 및 차량진입로 등 보도 단절 구간은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li> <li>○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정비지침」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준수 - 보도의 유효 폭 확보</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0%;">적용기준</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보 도 의 유효 폭</td> <td style="text-align: center;">2.0m 이상</td> <td></td> </tr> <tr> <td>수 직 여 유효 공 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2.4m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기준	비고	보 도 의 유효 폭	2.0m 이상		수 직 여 유효 공 간	2.4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차로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음</li> <li>○ 중로1-81호선의 경우 단기계획으로 우선 개설하여 폭원 15m에 보도는 편측 1.5m를 설치하는 안이며, 장기계획에 석탄공사 부지의 5m구간을 향후 개설하여 폭원20m에 보도는 양측에 2.75m로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였음</li> </ul>	반영	[첨부1]								
	구분	적용기준	비고																			
보 도 의 유효 폭	2.0m 이상																					
수 직 여 유효 공 간	2.4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보도 구간 등 보도의 경계석 턱 낮춤 시공</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 style="width: 30%;">적용기준</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경 계 석 단 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2cm 이하</td> <td>가능한 단차를 없앤다.</td> </tr> <tr> <td>턱 낮 추 기 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150cm</td> <td>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0.9m 이상</td> </tr> <tr> <td>턱 낮 추 기 경 사 로</td> <td style="text-align: center;">1/12 이하</td> <td></td> </tr> <tr> <td>경 사 로 측 면 경 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1/10 이하</td> <td></td> </tr> <tr> <td>보도의 보행자 통행구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효 폭 1.2m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기준	비고	경 계 석 단 차	2cm 이하	가능한 단차를 없앤다.	턱 낮 추 기 폭	100~150cm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0.9m 이상	턱 낮 추 기 경 사 로	1/12 이하		경 사 로 측 면 경 사	1/10 이하		보도의 보행자 통행구간	유효 폭 1.2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보도 구간에 보도의 경계석 턱 낮춤은 설계에 반영하였음</li> </ul>	반영	
구분	적용기준	비고																				
경 계 석 단 차	2cm 이하	가능한 단차를 없앤다.																				
턱 낮 추 기 폭	100~150cm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0.9m 이상																				
턱 낮 추 기 경 사 로	1/12 이하																					
경 사 로 측 면 경 사	1/10 이하																					
보도의 보행자 통행구간	유효 폭 1.2m 이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p>- 횡단보도 구간 등 보도의 경계석 턱 낮춤구간 평면도</p>  <p>설 명   경계석 턱 낮춤 평면도</p> <p>설 명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p>																							
		<p>○ 점자블록 설치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09 842 1361 1066"> <thead> <tr> <th colspan="2">점형블록(표준형)</th> <th colspan="2">선형블록(표준형)</th> </tr> <tr> <th>규격</th> <td>30cm × 30cm</td> <th>규격</th> <td>30cm × 30cm</td> </tr> </thead> <tbody> <tr> <td>돌출 점 의 수</td> <td>36개</td> <td>돌출 선 의 수</td> <td>4개</td> </tr> <tr> <td>돌출 점 의 높 이</td> <td>0.6 ± 0.1cm</td> <td>돌출 선 의 높 이</td> <td>0.5 ± 0.1cm</td> </tr> <tr> <td>돌출 점 의 형 태</td> <td>원뿔 절단형</td> <td>돌출 선 의 형 태</td> <td>상단부 평면형</td> </tr> </tbody> </table>	점형블록(표준형)		선형블록(표준형)		규격	30cm × 30cm	규격	30cm × 30cm	돌출 점 의 수	36개	돌출 선 의 수	4개	돌출 점 의 높 이	0.6 ± 0.1cm	돌출 선 의 높 이	0.5 ± 0.1cm	돌출 점 의 형 태	원뿔 절단형	돌출 선 의 형 태	상단부 평면형	<p>○ 점자블록은 설계에 반영하였음</p>	반영	
점형블록(표준형)		선형블록(표준형)																							
규격	30cm × 30cm	규격	30cm × 30cm																						
돌출 점 의 수	36개	돌출 선 의 수	4개																						
돌출 점 의 높 이	0.6 ± 0.1cm	돌출 선 의 높 이	0.5 ± 0.1cm																						
돌출 점 의 형 태	원뿔 절단형	돌출 선 의 형 태	상단부 평면형																						
		<p>○ 보도 내에는 보행자 동선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수목, 도로표지판, 가로등, 한전주, 신호등 제어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 폭 밖으로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p>	<p>○ 중로1-81호선 장기계획에서 보도는 2.75m를 설치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하였음</p>	추후 반영	[첨부1]																				
		<p>○ 도로표지규칙에 부합하도록 사업구간 및 인접부를 포함하여 도로표지를 설치하되, 안내문구 등은 별도 협의(건설과 도로팀) 후 설치</p>	<p>○ 중로1-81호선 종점부는 기존안내 표지가 있어 미설치하였음</p>	미반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 기타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정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수립 및 시공	○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반영	
	도로조명 시설 (도로 조명팀)	1. 기본방향 - 인천광역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규정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고효율 및 KS -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지역제품 우선사용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겠음 ○ 지역제품 우선 사용하여 적용하겠음	반영	
2. 조도기준 - 도로간선: M2(22.5LX)기준 이상 적용		○ 기준조도이상 반영하겠음	반영		
3. 가로등주 - 철재 원형2단(분체도장) 9.5M 1등, 2등용 가로등주 반영 (디자인 및 규격은 필히 별도협의) (가로등 신설구간 50CM 매입), 가로등 암 : 2.5M - 가로등주 디자인은 도시미관 증대 및 획일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디자인 선정관련 설계 시 우리구와 필히 사전협의(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관내업체 자재를 사용하고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조달 단체표준 제품사용) - 등주 하단부 내장형 감전보호대와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 안정기커버 높이를 침수방지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 도로 반대편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가로등주 매설깊이 50cm 감안) : 안정기 커버하단 1m높이 설치 - 우리구 적용 가로등 표찰 및 막주표시(청색) 설치		○ 철재원형2단(분체도장) 9.5M 1등을 반영하겠음(사전협의 및 관내 조달 단체표준 제품을 반영하겠음)  ○ 감전보호대와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하겠음 ○ 안정기 커버하단 1M 높이로 반영하겠음  ○ 가로등표찰 및 막주표시 반영하겠음	반영		
4. 광 원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1호)에 의거하여 신설되는 도로조명시설물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로 『2017년 100%』 설치하여야 하는바, 가로등 및 인도 등 광원을 고효율과 KS인증 LED 제품으로 전량 설계 반영할 것. - 빔공해방지법에 위배되지 않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사용 권장		○ 가로등 및 인도 등 광원을 고효율과 KS인증 LED 제품으로 반영하겠음  ○ 각도조절이 가능한 제품으로 반영되었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5. 배열방식 - 마주보기 배열만 적용 설계(추후 보도 및 도로확장시 반영) - 지그재그 배열 방식 불가	<input type="radio"/> 마주보기 배열로 설계에 반영하였음	반영	
		6. 배선방식 - 가로등 지중선로 도로횡단 금지 - 상시 및 격등 배선 적용(일방향 500M이내) - 제어함 1대당 가로등주 20분 이내 예) 좌 10분, 우10분, 1회로 : 5분 이내	<input type="radio"/> 횡단금지 적용하겠음 <input type="radio"/> 격등배선 적용하겠음 <input type="radio"/> 가로등주를 20분 이내로 적용하겠음	반영	
		7. 제어방식 - 우리구 기 운영 관제시스템 연계토록 적용	<input type="radio"/> 관제시스템과 연계토록 적용하겠음	반영	
		8. 전선관 - CD-P 전선관(구 PE관) 36mm이상 적용 - 가로등기초내 삽입전선관(54mm)이상 적용	<input type="radio"/> 전선관을 36mm이상으로 반영하였음 <input type="radio"/> 가로등기초내 삽입전선관을 54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음	반영	
		9. 케이블 - F-CV 컬러 케이블 사용 - 간선설계 : 부하제감방식 적용 - 최대굵기 : F-CV 16SQ×1C 사용 - 최소굵기 : F-CV 6SQ×1C 사용 - 한전인입선은 F-CV 25SQ이하를 사용하고 반경철관으로 보호하며 캐치홀더를 설치한다.	<input type="radio"/> 해당 케이블로 설계에 반영하였음	반영	
		10. 등주내배선 - 가로등 및 인도등은 F-CV 2.5SQ×3C 사용	<input type="radio"/> 등주내 배선 F-CV 2.5x3C 반영하겠음	반영	
		11. 배관의 매설깊이 - 차도부:1.2m이상 보도부:0.6m이상 - 지중선로 표시기 설치(등주당 2개소)	<input type="radio"/> 횡단 기 반영하였음 <input type="radio"/> 지중선로 표시기 적용하겠음	반영	
		12. 접지방식 - 가로등간 연결접지 및 개별접지 병행 시공 - 개별 F-GV 16SQ, 연결 F-GV 6SQ - 가로등주내 접지단자대 사용(가로로 배치)	<input type="radio"/> 연결 및 개별접지로 반영하였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13. 제어반형식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등주 일체형STS제어함 사용(4회로적용)	○ 제어반을 4회로용으로 적용하겠음	반영	
		14. 기초 - 일반 콘크리트 기초사용(기성품 사용, 550*900*710*800) : 접지동판 내장형 - 일체형 제어함 기초사용(콘크리트 기성품 사용, 650*900*1300) : 개별접지 접지봉 3본	○ 기초를 기성품으로 적용하겠음	반영	
		15. 기타사항 - 설계도면 내 핸드홀 삭제(맨홀 사용금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도로법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공사시행)에 의거하여 공공시설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완료시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보며, 인수인계전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의 납부는 비관리청(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도로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 및 시공방법 등 우리구(전기팀)와 필히 사전협의하며, 협의없이 진행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구 이관 불가. - 2015년 기 개설된 도시계획시설(중1-68호선) 도로개설구간 도로조명시설 협의의 미이행으로 인한 지적사항으로 재 시공한 부분을 참조하여 필히 협의의견대로 시공할 것.	○ 핸드홀 및 맨홀을 미설치하겠음	반영	
		<b>☐ 중로1-68호선 현장점검 지적사항</b> ○ 가로등주 내 케이블 입선 불량 - 케이블 여장 없음(전선 빨림 및 지반 침하시 보수불가) - 케이블 A,B회로 구분 미표기(A:흑백, B:적황 - 케이블 말단부에서 아래로 약 50cm 구간 접감기하여 처리함)			
		○ 케이블 결선 불량 - 케이블 연결 접속부 마감 불량 - 케이블 전원 1,2차 미표시 - 정식 용도 외 케이블 사용(접지선을 전원선으로 사용) - LED등기구 SMPS 입력부 오결선	-	-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지공사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주 개별 및 연결지 시공 누락</li> <li>- 가로등주 내 접지단자대 설치 불량</li> </ul> </li> <li>○ 가로등주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 단체표준 기준에 미달(안정기 취부구 보강 미실시)</li> <li>- 가로등주와 암대 체결불량(기울어짐)</li> <li>- 가로등 막주표시(고휘도 반사지-청색) 미설치 (가로등주 상부에서 2M아래로 설치)</li> <li>- 가로등주 부착물방지시트 및 내장형감전보호대 미설치</li> </ul> </li> <li>○ 가로등기구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면 내용과 상이(고효율 및 KS인증 증빙자료 제출 및 관급자재 하자 이행기간(5년) 각서 첨부)</li> <li>- 가로등주와 암대 체결불량(기울어짐)</li> <li>- 가로등기구 설치 높이 부적합(지면에서 4m 높이에 재설치하고 천공부 방수마감처리 요망)</li> </ul> </li> <li>○ 가로등 표찰 설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표찰설치 불량(제어함은 좌1번으로 명기하며 제어함을 기준으로 좌,우로 오름차순으로 진행)</li> </ul> </li> </ul> <p>※ 지적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필히 담당자와 추가 협의후 시공할 것</p>			
		<p><b>☐ 가로등 설치 시공관련 검토의견</b></p> <p><b>1. 가로등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표찰(우리구 별도 번호부여) 및 막주(청색) 표시(고휘도 반사지 부착)</li> <li>○ 등주 하부를 지중 매입함에 따라 가로등주 길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면부 설치시 제외(법면부 9M, 10M 적용)</li> </ul> </li> <li>예) 9m 가로등 설치시 : 가로등 하부 지중매입을 고려 실높이 9.5m 사용</li> <li>○ 가로등 암 길이 : 2.5m (나뭇가지 빛 차단 고려)</li> <li>○ 등기구 각도 : 12°</li> <li>○ 등주 재질 : 철재 분체도장(기와 진회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주를 수정 반영하겠음</li> </ul>	반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p><b>2. 기타 부속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번호는 도로기준 좌, 우 표기</li> <li>○ 제어함내 회로기준은 인도기준 ELB1-좌상시,ELB2-우상시,ELB3-좌격 등,ELB4-우격등으로 구성한다</li> <li>○ 볼트캡(배주 그리스 도포) 및 베이스카바 설치후 매입구간 모래 충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부속자재를 반영 하겠음</li> </ul>	반영	
		<p><b>3. 조도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A 3701('07.11개정안) 참고 적용 ⇒ 조도계산서 작성하여 가로등 간격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SA 3701에 의거 가로등 간격을 조정 하겠음</li> </ul>	반영	
		<p><b>4. 배선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설 깊이 : 0.6M이상(차량 통행부분 1.2M이상)</li> <li>○ 지중케이블 : 600V F-CV 1C x 4가닥(막주 포함), 연결지 F-GV 6SQ 1C 포함 - 케이블은 지표면 기준 2M이상 여유있게 시공(유지보수 용이) - 케이블 여장둘 것.</li> <li>○ 인입 : 600V F-CV 25mm<sup>2</sup>/1C x 2L(전선퓨즈, 반경철관 등 설치)</li> <li>○ 케이블 결선시 회로가 뒤바뀔 수 없도록 주의</li> <li>○ 지중에서 접속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선 방식을 수정 반영하겠음</li> </ul>	반영	
		<p><b>5. 기타 시공관련 주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설 관로는 지정 깊이로 터파기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되메움하여 충분히 다지기를 실시한다.(모든 굴착구간을 모래로 되메우기 함.)</li> <li>○ 관의 굵기는 케이블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li> <li>○ 전선관은 사용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중이나 준공후에는 전선관의 종단을 잘 막아 <b>흙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b> 철저히 마무리 한다.</li> <li>○ 관로는 등주, 수공등 접속개소 외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li> <li>○ 습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배관은 가능한 한 방수 보호 시설을 하고 U자 배관을 배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공사 시 반영하겠음</li> </ul>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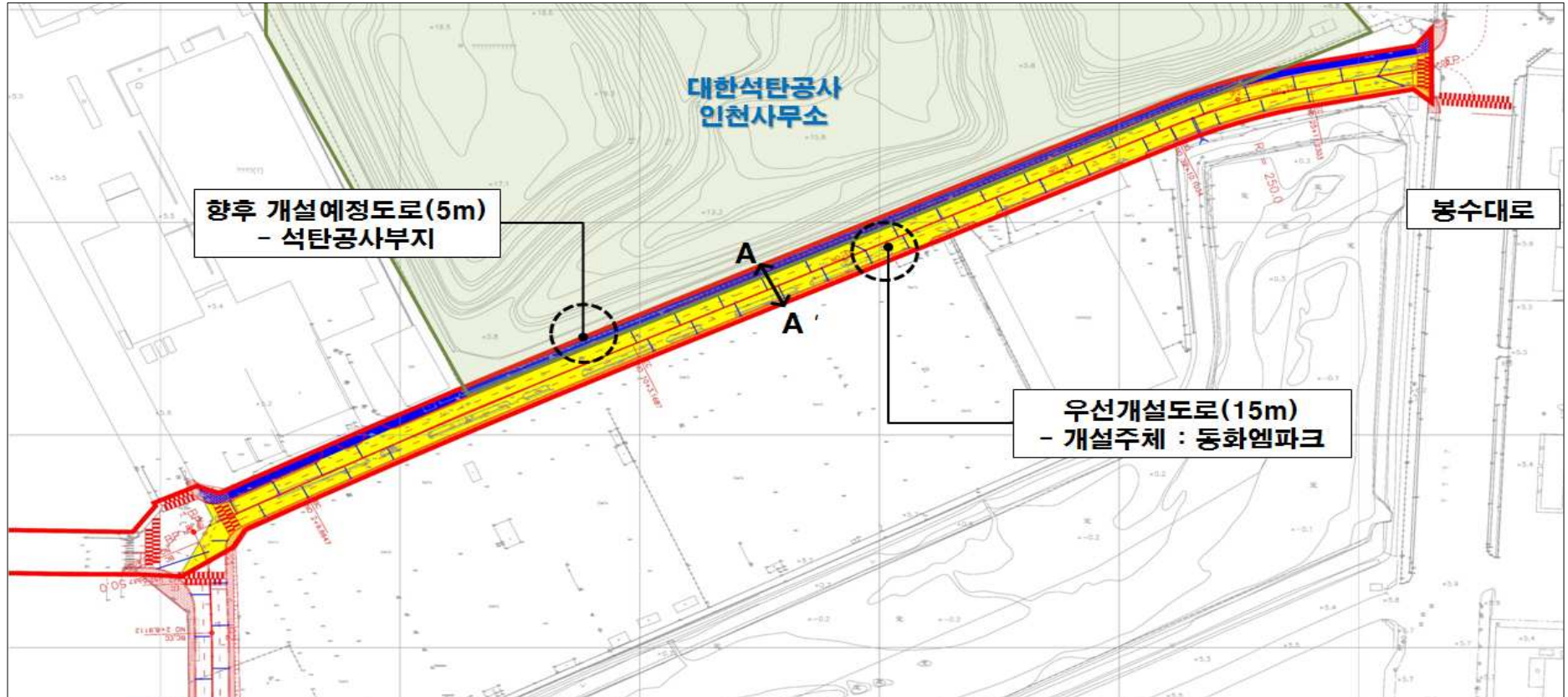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내선규정 『합성수지관 배선 방법』에 의한다.</li> <li>○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 상호간의 접속은 상위 배관 50~60[cm]를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li> </ul> </li> <li>○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 접속시에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는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li> <li>○ <u>전선관내에서 전선 및 케이블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u> 또한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u>지중 재연결 접속 불가</u>)</li> <li>○ 전선, 케이블 접속부분은 적합한 절연 테이프 등(1차 비닐, 2차 고무, 3차 비닐 실시)을 써서 반쪽이상 겹쳐 감는다. 두께는 절연 부분에서는 피복두께 두께의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한다.</li> <li>○ 케이블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li> <li>○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li> <li>○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li> <li>○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 박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li> <li>○ 케이블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가로등 : 지표면에서 2[m] 준수</u></li> <li>· <u>제어함 : 지표면에서 2[m] 준수</u></li> </ul> </li> </ul>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하수시설 (치수관리 팀)		○ 하수도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부에서 제정한(2011.04) 하수도시설기준 및 공공 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지침(2007.10)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할 것	○ 하수도시설기준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준수하였음	반영	
		○ 사업계획 구간 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검토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2015.10) 반영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처리 공사시행 및 공사시행 전 우리 구(치수관리팀)과 사전협의	○ 공사시행 전 협의하겠음	반영	
		○ 공사시행 전 지구 내 도로계획노선을 기준으로 하수계획도 및 시설물 설치 계획 현황 관리대장 제출 - 하수계획도 및 관리대장에 의거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 공사시행 전 관리대장을 제출하겠음	반영	
		○ 하수관에 접속하는 집수반이 및 개인배수설비 관로는 전용 접속관을 사용하여 관로 기계천공 후 연결시공	○ 연결관은 전용접속관을 사용하여 연결 하였음	반영	
		○ 하수관 설치 완료 시(도로 포장 전) 하수관 내 준설 및 CCTV 촬영결과 제출	○ 공사완료 후 준설 및 CCTV 촬영결과를 제출하겠음	반영	
		○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1, 2항 및 「측량수조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등에 따라 도로개설로 설치된 지하시설물(도로 및 부대시설물 포함)에 대하여 표준화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완료 전 <b>공공측량 성과심사</b> 를 득한 <b>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b> 제출	○ 사업완료 전 지하시설물도를 제출 하겠음	반영	
서구청 주차 관리과	교통안전 시설	○ <b>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b>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11.)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11.) ⇒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상기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상기 규정 또는 동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였음	반영	
		○ 교통안전시설심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준공 시 우리 과와 별도 협의	○ 교통안전시설 심의 후 관련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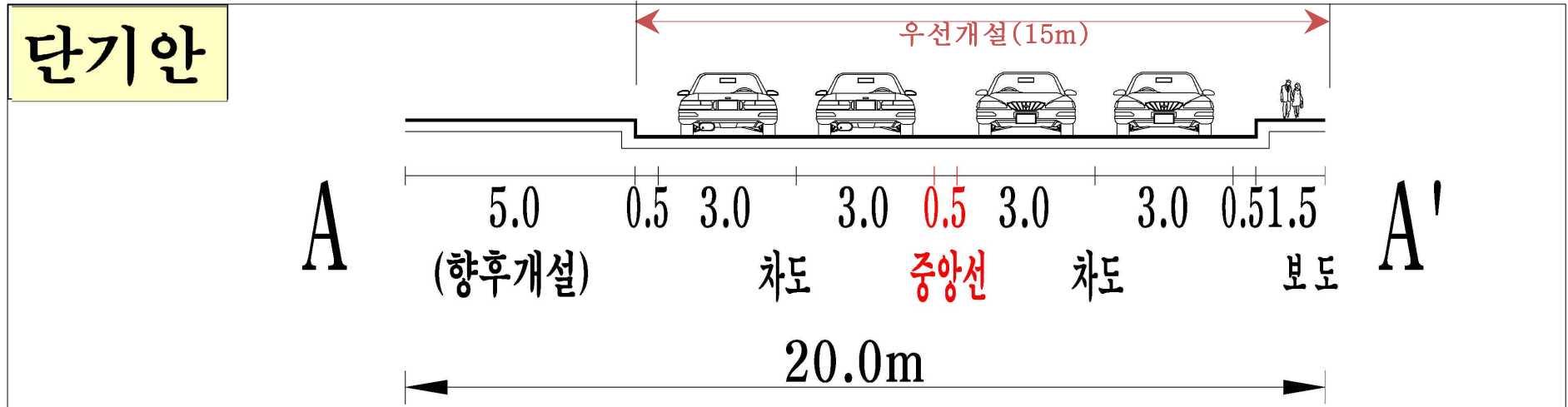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인천시 도로과	도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광로3-9호선과 접속 구간 변속차로 등 반영	○ 중로1-81호선은 비관리청사업(무상귀속)으로, 광로3-9호선의 변속차로 설치하는 사유지 저촉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민간에서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대상지 남측 봉수사거리에서도 별도의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변속차로는 미설치하였음	미반영	[첨부2]
		○ 중로 1-81호선의 보도폭은 장기 계획인 2.75m로 반영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4차로를 확보하여 우선개설하고 향후 폭원 20m로 개설시 보도폭 2.75m를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첨부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하여 준수 할 것.	○ 기타 규칙을 준수하겠음	반영	
서부수도 사업소	상수도 시설	○ 관중은 주철관(내부에폭시)으로 시공	○ 주철관(내부에폭시)으로 적용하겠음	반영	
		○ 접합소켓은 이탈방지압륜 사용	○ 이탈방지압륜은 반영하였음	반영	
		○ 시점과 종점부분 기존 상수도관 연결 시 단수없는 무단수공법으로 시공	○ 무단수공법을 반영하겠음	반영	
		○ 공사구간 중간지점에 제수변 설치	○ 제수변을 설치하겠음	반영	
		○ 소화전은 당초 설치지점에서 위치변경하여 공사 중간지점과 종점부근에 설치	○ 소화전 위치를 조정하겠음	반영	
		○ 세부시공계획은 공사시행 전 서부수도사업소와 협의	○ 공사시행 전 서부수도사업소와 협의 하겠음	반영	

**첨부 1. 중로1-81호선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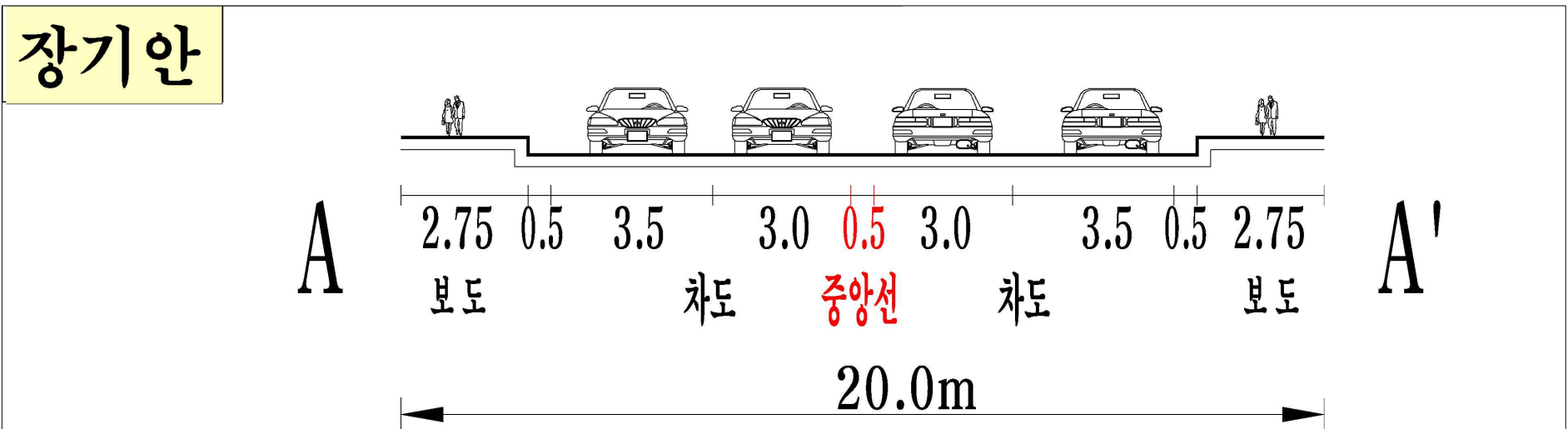
- 중로 1-81호선 미개설구간에 대하여 폭 20m 중 15m를 금회 실시계획인가 제안자인 동화엠파크(주)에서 우선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잔여 5m 구간에 대하여는 석탄공사 및 산업통산자원부 유상매입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향후 실시계획인가 주체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중로1-81호선 단면도>



→ 단기안: 동화엠평크(주)에서 15m구간 비관리청사업 실시(무상귀속)



→ 장기안: 실시계획인가 주체가 향후 잔여 5m구간 개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3항 : 보도의 유효폭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첨부 2. 광로3-9호선 변속차로 설치여부

1) 변속차로(우회전차로) 설치조건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6-3-3 우회전차로)

■ 우회전 차로는 우회전 교통량이 많아 직진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설치함

① 회전 교통류가 주교통이 되어 우회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 주로 간선도로가 교차로에서 직각으로 굽은 경우에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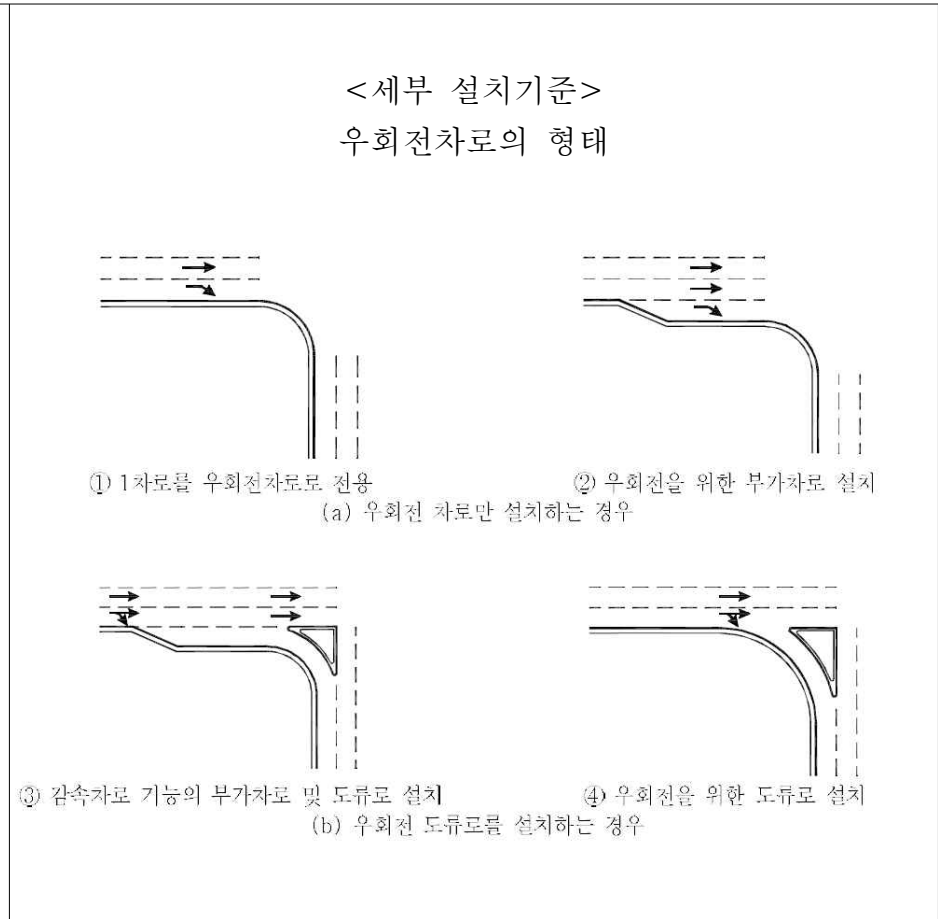
나며, 이 경우는 교차로 전체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우회전 자동차의 속도가 높은 경우

- 지방지역에서 간선도로가 교차로에 접속된 경우에 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를 감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감속차로 기능을 담당할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교차각이 120도 이상의 예각 교차로로서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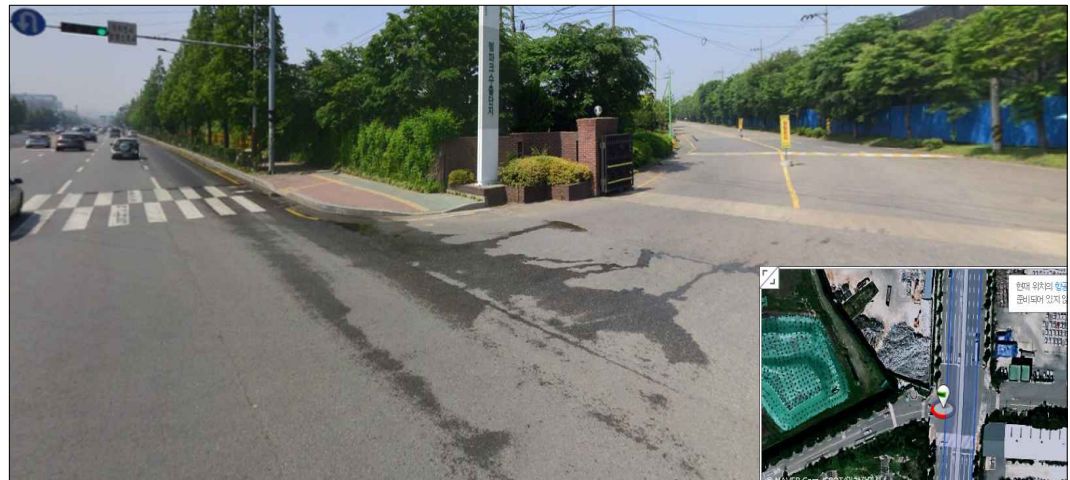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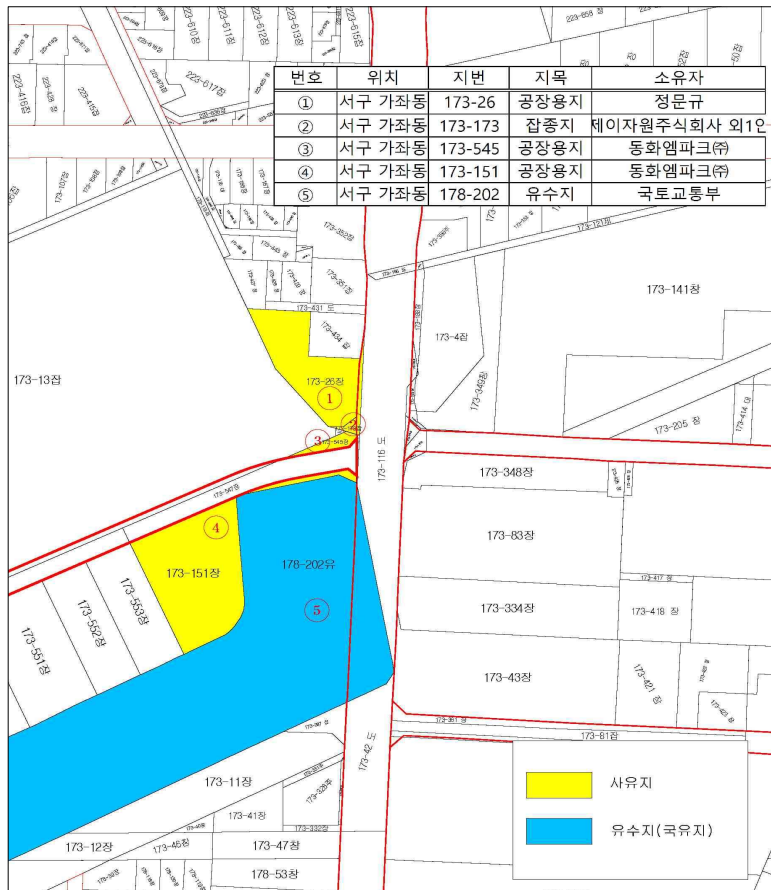
<세부 설치기준>  
우회전차로의 형태



### 2) 대상지 현황 및 변속차로 설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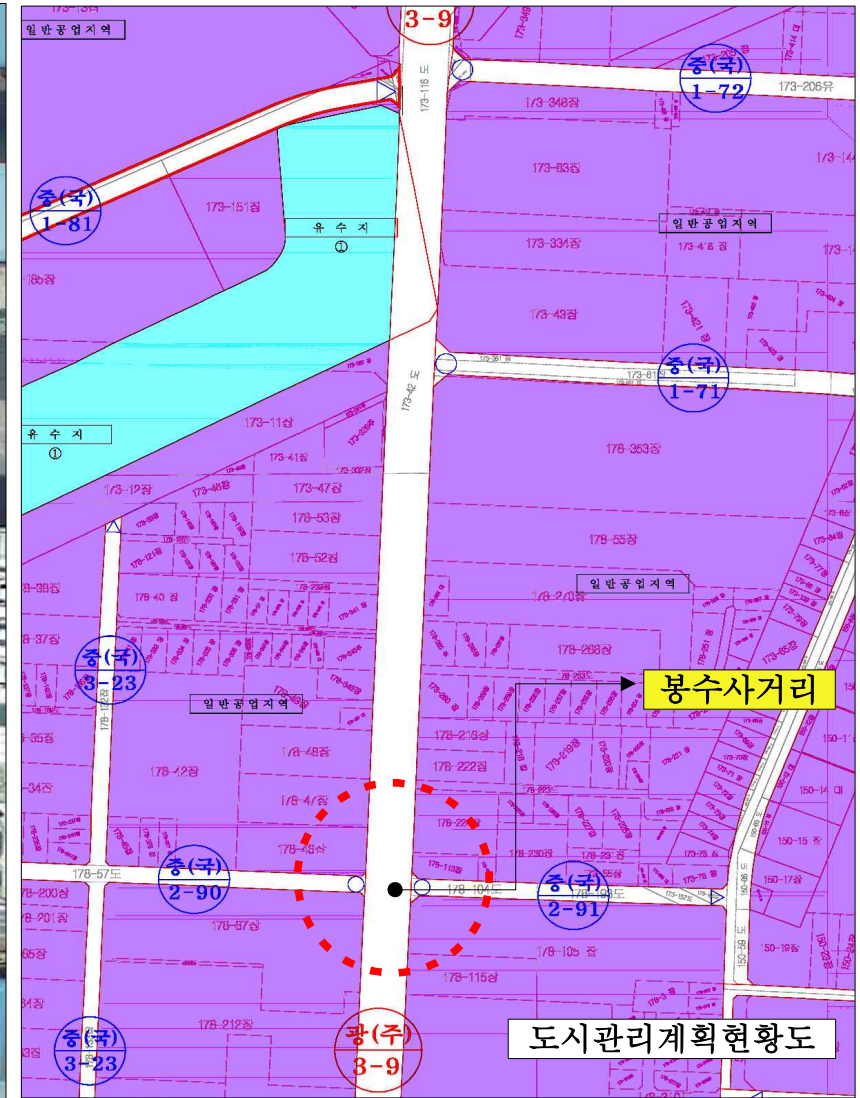
- 광로3-9호선의 변속차로 설치에 사유지 저촉에 따른 민원발생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 기존 보도폭원 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기준에 위배되어 기존 봉수대로에서 운영 중인 방식인 도로의 모서리 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 설치로 계획하였음

< 주변 지적 현황 >



① 대상지 남측 봉수사거리 교통운영

- 봉수대로와 연결되는 4차로(중로2-90, 중로2-91호선)를 직진 및 우회전 차로로 운영 중
- 별도의 변속차로 미설치



② 기존 도시계획선 내의 가·감속차로 설치여부

- 기존 봉수대로 보도부 3.5m, 식수대 1.0m
  - 보도부 내의 변속차로 3.0m 설치 시 보도폭원은 1.5m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유효폭원을 확보할 수 없음.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 보도유효폭원 3m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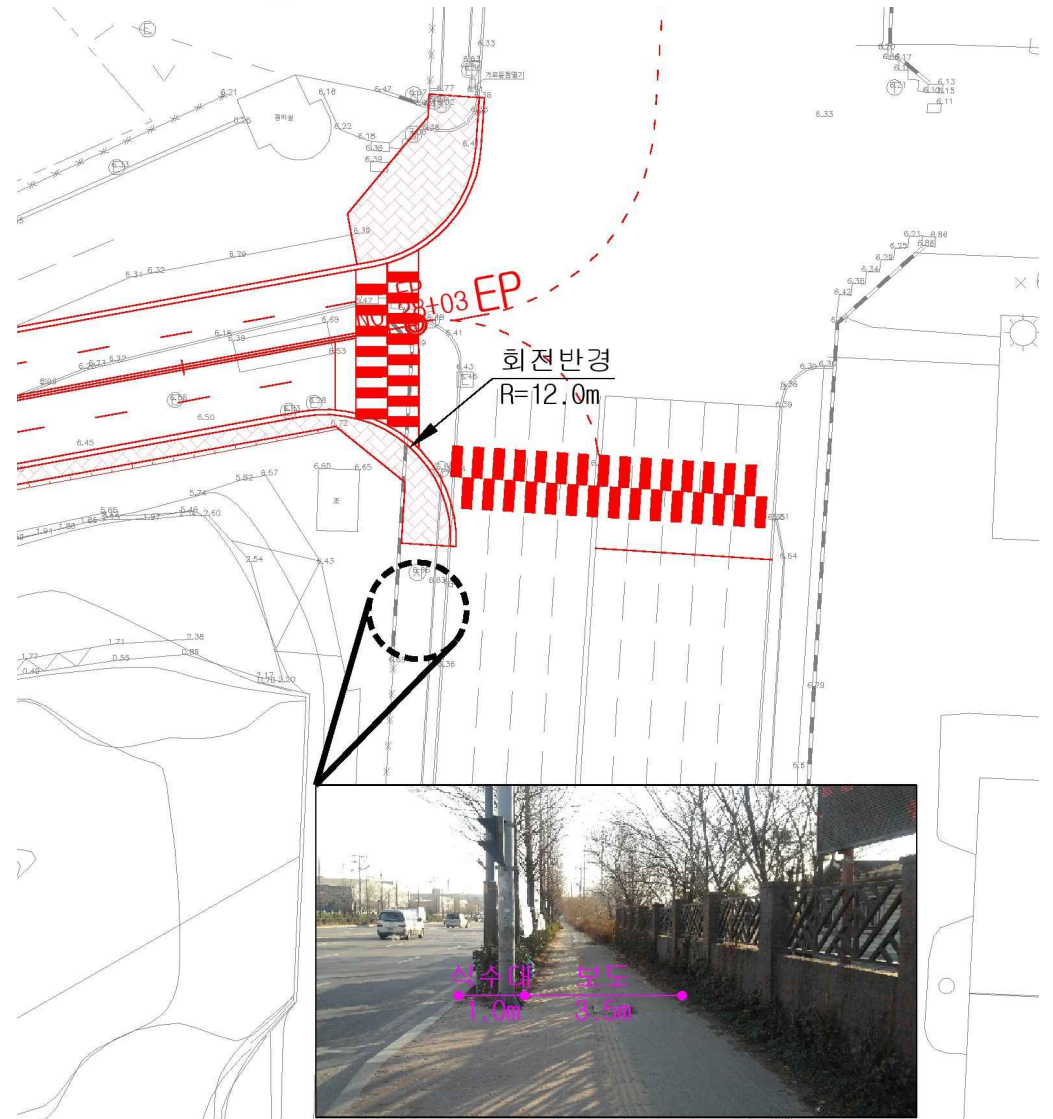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 3】 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 유효보도폭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봉수대로에서 운영 중인 방식인 도로의 모서리 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 설치로 계획하였음 (회전반경: 12m)

<봉수대로 접속부분>



## 도시계획시설사업(중1-68 및 1-81호선) 실시계획인가조건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에 필요한 협의서류 등을 첨부(공인기관의 측량결과에 의한 도시계획선 부합여부 측량성과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부여된 협의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담당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4.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노면표지 등) 설치 시 인천지방경찰청과 별도 협의(심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조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6.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륜시설, 방진벽(망)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분리배출·보관·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정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8. 집중호우,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재 확보 등 종합적인 방재계획(자재확보, 우·배수관로 점검, 비상연락망체계구축,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공익 및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가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인가조건의 미 이행 등 기타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 할 경우는 인가권자가 동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72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 및 소3-5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 소로3류2호선 및 소로3류5호선, 사업명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5.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1. 변경사유 :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편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3류2호선)
  - 명칭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변경)
  - 【기정】  $L=231m$ ,  $B=6m$ ,  $A=2,078m^2$
  - 【변경】  $L=231m$ ,  $B=6m$ ,  $A=2,069m^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14. 05. 26. ~ 2015. 12. 31.
  - 【변경】 2014. 05. 26. ~ 2016.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변경) : 불입과 같음

## ■ 용 지 조 서 (변경)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47-35	전	223	223	국	재정경제원				
	변경	47-35	전	223	223	공	인천 서구				
2	당초	산38-2	구	23	23	김성자 외1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47				
	변경	산38-2	구	23	23	공	인천 서구				
3	당초	47-10	임	711	81	윤대석 외1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7-9	중소 기업 은행	서울중구 을지로2가50	근저 당권	
	변경	47-39	임	72	72	공	인천 서구				
4	당초	40	전	1,491	374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창빌라 비동 306호				
	변경	40-31	전	134	134	공	인천 서구				
	변경	40-32	전	240	240	공	인천 서구				
5	당초	41-1	전	7	7	정홍섭 외8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7	근로복 지공단	경인지역 본부	압류	
	변경	41-1	전	7	7	정홍섭 외8인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7	근로복 지공단	경인지역 본부	압류	공탁 (1/22)
6	당초	40-2	구	2,003	193	한국농 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변경	40-33	구	193	193	공	인천 서구				
7	당초	산41-2	구	893	53	국	농림부				
	변경	20-9	구	53	53	공	인천 서구				
8	당초	산41-1	임	1,190	448	국	산림청				
	변경	20-5	임	123	123	공	인천 서구				
	변경	20-6	임	268	268	공	인천 서구				
	변경	20-7	임	57	57	공	인천 서구				
9	당초	18-1	전	3,264	637	정복섭 외2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	서인천 농업협 동조합	인천서구 가정로353	근저 당권	667.5 /3643
	변경	18-16	전	13	13	공	인천 서구				
	변경	18-17	전	41	41	공	인천 서구				
	변경	18-18	전	493	493	공	인천 서구				
	변경	18-19	전	48	48	공	인천 서구				
	변경	18-22	전	30	30	공	인천 서구				
10	당초	20	전	1,699	15	이명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6-17				
	변경	20-3	전	9	9	공	인천 서구				
	변경	20-4	전	6	6	공	인천 서구				
11	당초	산42-3	임	99	18	국	산림청				
	변경	18-24	임	9	9	공	인천 서구				
	변경	18-25	임	9	9	공	인천 서구				
12	당초	11-20	도	3,246	4	공	인천 서구				
	정지 확정	11-20	도	3,246	4	공	인천 서구				
13	당초	18-7	도	199	2	공	인천 서구				
	정지 확정	18-7	도	199	2	공	인천 서구				
소 계				15,048	2,078						
				5,508	2,069						

## ■ 지 장 물 조 서 (변경)

### 【당초】

번호	소재지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47-10	정자	목재	1식	윤대석 외 1인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 47-10	
		공원등(조명)	-	2주		
		수도시설	-	1식		
		석탑	석재	1식		
		석축	자연석	32㎡		
		지피식물	맥문동 외	84㎡		
		교목	촉백 H4.0	52주		
		교목	촉백 H3.0	26주		
		교목	소나무 H3.0	7주		
		교목	매화나무 H2.0	2주		
		관목	수국 H1.5	10주		
		관목	장미나무 H1.5	8주		
		관목	사철나무 H2.0	1주		
		과실수	감	2주		
		과실수	앵두	1주		
과실수	뽕(오디)	1주				
2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40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52㎡	이태순 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빌라비동306호	
		웬스	철골/망	20.5m		
		과실수	복숭아	4주		
		과실수	자두	1주		
		과실수	사과	14주		
		과실수	블루베리	19주		
		과실수	무화과	8주		
		과실수	복분자	487주		
		과실수	뽕(오디)	1주		
		과실수	앵두	2주		
		과실수	매실	34주		
		과실수	구기자	5주		
		과실수	모과	1주		
		과실수	배	4주		
		과실수	결명자	26㎡		
		교목	솔나무	14주		
		작물	취나물	8㎡		
		작물	돼지감자	8㎡		
		작물	깻잎	13㎡		
		작물	가지	6㎡		
		작물	덩쿨덤브	6㎡		
수도시설	콘크리트	3㎡				
3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40-2	판자	판자/스레트	7㎡	소유자 미상	
		웬스	메쉬	2m		
		웬스	철골/망	39m		
4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18-1	비닐하우스	철골/비닐	1,289㎡	정복섭 외 2인 인천광역시서구 공촌동11-2	
		유류탱크		2개		
		물탱크		1개		
		간이화장실		1개		
		채신주		1개		
		전기계량기		1개		
		열풍기		3개		
		전조시설		1식		
		관수시설		1식		
		관정		2개		
		작물	유카리	1,275㎡		

### 【변경】

지장물 없음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1. 변경사유 :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편입면적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3류5호선)
  - 명칭 :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변경)
  - 【기정】 L=66m, B=6m, A=606m<sup>2</sup>
  - 【변경】 L=66m, B=6m, A=500m<sup>2</sup>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15. 09. 14. ~ 2016. 03. 31.
  - 【변경】 2015. 09. 14. ~ 2016.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변경) : 붙임과 같음

■ 용 지 조 서 (변경)

연번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40	전	1,117	382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창빌라 비동 306호	-	-	-	
	변경	47-37	전	273	273	공	인천 서구				
2	당초	산38-5	임	165	9	국	기획재정부	-	-	-	
	변경	47-41	임	11	11	공	인천 서구				
3	당초	11-20	도	3,246	107	공	인천 서구	-	-	-	
	변경	11-20	도	3,246	107	공	인천 서구				
4	당초	40-11	임	920	35	이정순 외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450번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변경	40-39	임	36	36	공	인천 서구				
5	당초	20-1	임	345	11	국	산림청	-	-	-	
	변경	20-10	임	11	11	공	인천 서구				
6	당초	40-31	전	134	27	공	인천 서구	-	-	-	
	변경	40-31	전	134	27	공	인천 서구				
7	당초	20-5	임	123	35	공	인천 서구	-	-	-	
	변경	20-5	임	123	35	공	인천 서구				
소 계				6,050	606						
				3,834	500						

## ■ 지 장 물 조 서 ( 변경 )

### 【 당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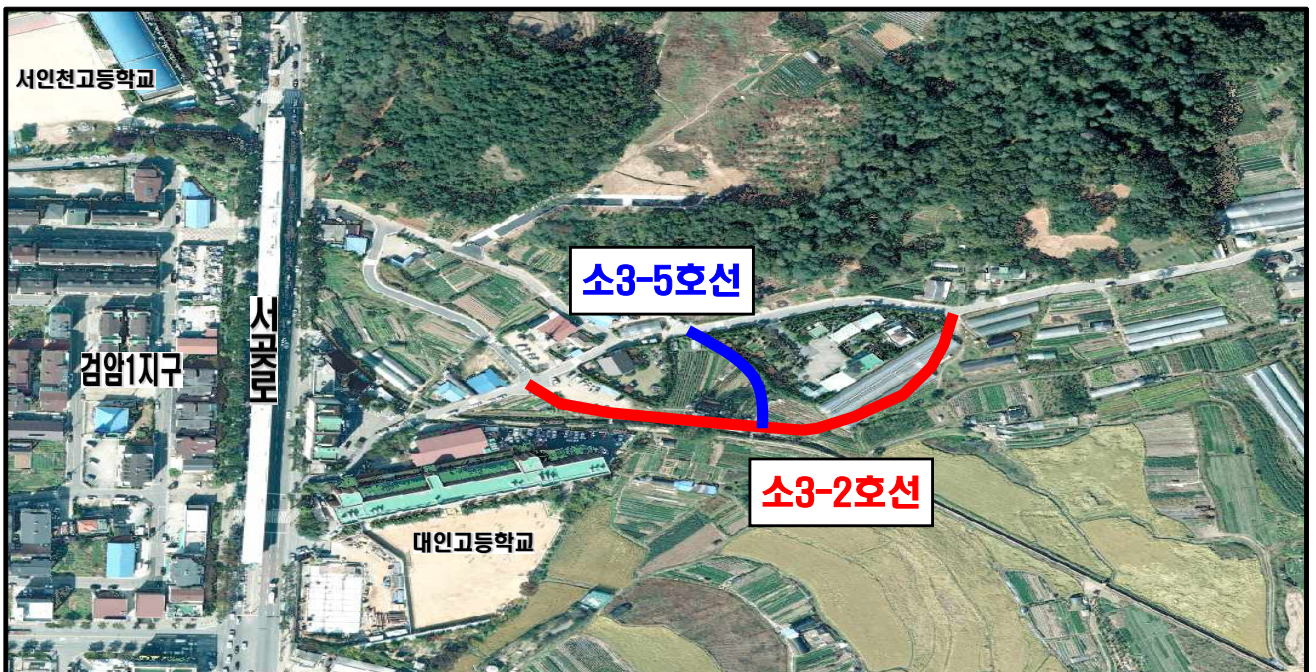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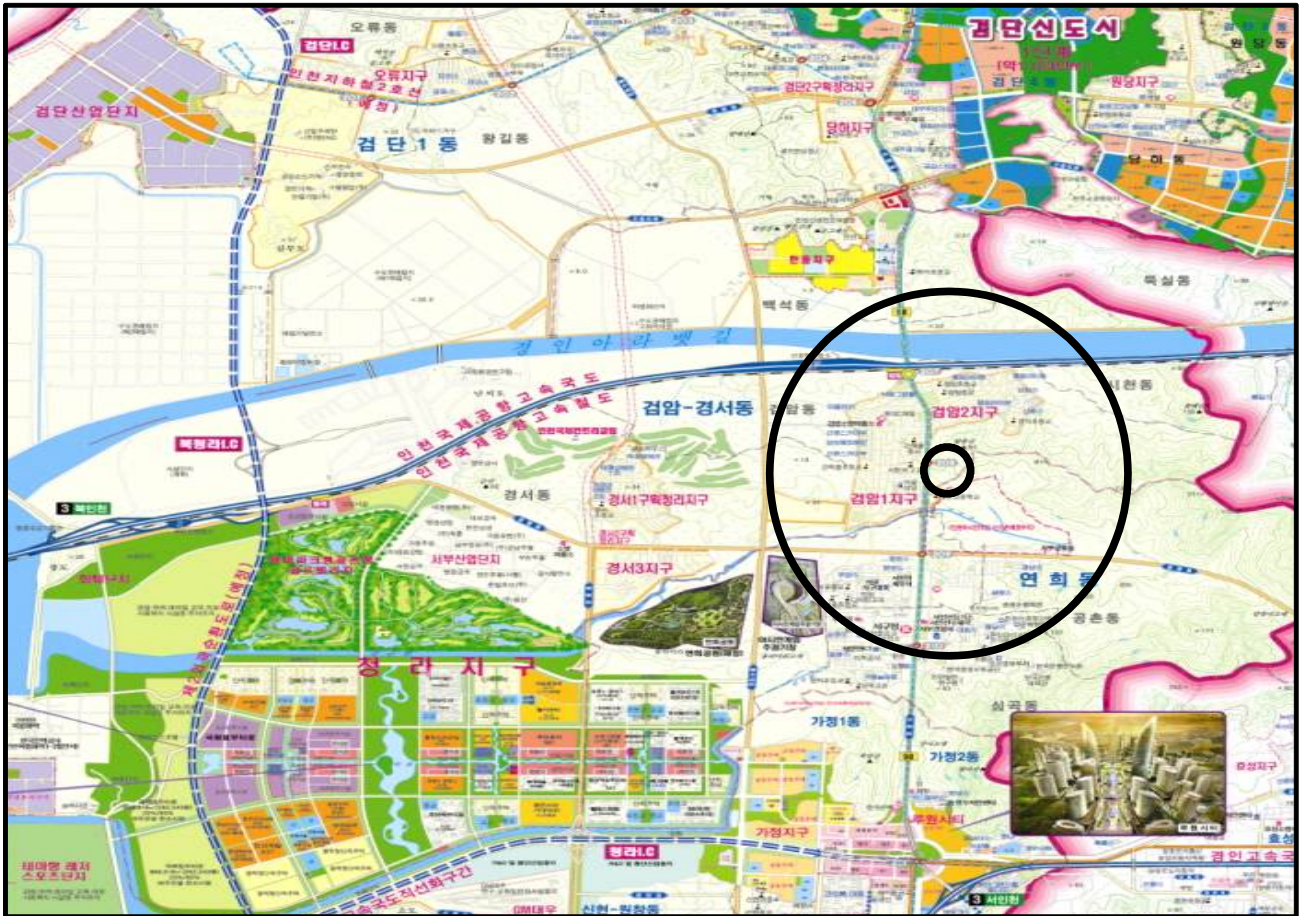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 건 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공촌 동	40전	비 닐 하우스	철골/비닐	3.0x6.0	5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 빌라B/306호	(단위/m2)
							4.0x6.0	17	이태순	"	(단위/m2)
2	인천	서구	공촌 동	11-20 도	통신맨홀	콘크리트	D900	1	kt		(단위/개소)
3	인천	서구	공촌 동	40임	수목	유실수	복숭아나무	7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 빌라B/306호	(단위/주)
							산수유	4	"	"	(단위/주)
							앵두나무	1	"	"	(단위/주)
							감나무	16	"	"	(단위/주)
							배나무	5	"	"	(단위/주)
							사과나무	3	"	"	(단위/주)
							대추나무	13	"	"	(단위/주)
							호두나무	1	"	"	(단위/주)
							은행나무	1	"	"	(단위/주)
							매실나무	28	"	"	(단위/주)
							꾸지뽕나무	9	"	"	(단위/주)
							블루베리	9	"	"	(단위/주)
					아로니아	36	"	"	(단위/주)		
					복분자	21	"	"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3	"	"	(단위/주)
							철쭉	15	"	"	(단위:m2)
							보리수	36	"	"	(단위/주)
							작약	2	"	"	(단위/주)
							국화	1	"	"	(단위/주)
					농작물		도라지	15	"	"	(단위/주)
들깨	25	"	"	(단위/주)							
고추	15	"	"	(단위/m2)							
고구마	15	"	"	(단위/m2)							
썩갓	15	"	"	(단위/m2)							
4	인천	서구	공촌 동	40-11 임	수목	조경수	측백나무	30	이정순 외1	인천광역시 서구 서 곶로450번길24(공촌 동)	(단위/주)
5	인천	서구	공촌 동	40-11 임	헨스	철골/망	h=1.8	41	"	"	(단위/m)
6	인천	서구	공촌 동	40-11 임	헨스	철골/망	h=1.8	43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 빌라B/306호	(단위/m)

### 【 변경 】

지장물 없음

# < 위치도 >

공촌취락지구 소3-2 및 소3-5호선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 당초협의의견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72호(2014.05.26)

관련기관	협의 내용	조치 계획	반영여부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함</li> <li>** 필지별 재산관리기관은 붙임문서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관리기관(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국유자산관리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절차를 진행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선상 누락된 임야에 대한 편입토지조서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토지조서를 보완하였음</li> </ul>	반영
서구청 녹지경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토지중 산림청 소유 임야에 대한 별도 협의(산림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소유 임야는 북부지방산림청 및 서울국유림관리소와 별도 협의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전용협이에 따른 첨부서류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락된 임야(산 지번)에 대한 첨부서류를 보완하였음</li> </ul>	반영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p>북부지방 산림청</p>	<p>○ 인천도시계획시설(소로3-2호선)에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41-1번지 외 1필지 “임야” 444㎡ 무상귀속 협의건은 아래와 같이 “부동의” 회신합니다.</p>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국유재산법」 제1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 하천, 항만 등 공공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만 무상귀속 협의 검토가 가능하나,</p> <p>- 귀 시에서 무상귀속 협의 요청한 재산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현황 전, 묘지 등으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p>	<p>○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인 서구 공촌동 산41-1번지 외 1필지 임야는 서울국유림관리소와 보상절차를 진행 하겠음</p>	<p>반영</p>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울국유림 관리소	○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사업 계획승인 후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후 사업 시행하되, 공촌동 산42-3번지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국유 재산 효용도 크게 저하되므로 잔여지로 일괄 보상하여야 함.	○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실시계 획승인 후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후 사업 시행하겠으며, 공촌동 산42-3번지는 공 부상 면적 99㎡중 편입면적이 18㎡로 극히 일부 이며 예산부족으로 인해 잔여지 일괄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부분반영
	○ 공촌동 산41-1번지는 우리 관리소에서 무단점유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식재한 개소이므로 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 지 내 입목에 대하여는 우리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식하여 줄 것	○ 공촌동 산41-1번지 토지 내 입목에 대하여 사업 구역 내 편입 시에는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지정 하는 장소로 이식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 과정에서 편입면적의 증·감 등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협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하고 변경승인 고시되면 서울국유림관 리소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 과정에서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 거나 협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변경승인 고시되면 서울국 유림관리소로 통보하겠음	반영
	○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게 단계별로 토목공사 를 시행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 또는 토 사유출 방지시설·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 설을 설치하여 인근 산림 및 주거·주변지역에 피해가 없 도록 조치 후 사업 시행	○ 대면적의 산림이 일시에 전용되지 않게 단계별로 토목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 분은 인근 산림 및 주거·주변지역에 피해가 없 도록 조치 후 사업 시행하겠음	반영
	○ 동 사업지(또는 연결지) 내 묘지가 존재하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후 사업시행	○ 사업지(연접지) 묘지는 본 사업 구역에 저촉되지 않음	반영
	○ 본 사업 관련 발생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고, 산 립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	○ 본 사업 관련 발생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 리하겠으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협의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편입면적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 협의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국유재산 편입면적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시에는 인접농지 등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체시설 설치시에는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인접농지 등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와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편입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동의하고, 공사시행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함	○ 공사시행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음	반영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 사업에 편입되는 우리공사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손실보상, 용지매수 등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 동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농업기반대체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우리지사와 별도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농업기반대체시설물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별도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 중 우리지사에서 민원사항, 구조물변경 등 보완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표수, 우수가 농업기반시설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중 보완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겠으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지표수, 우수가 농업기반시설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은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기 이후에 (매년 9월말이후~ 다음해3월말이전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제반사항 등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은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겠으며, 동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제반사항 등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p>서구청 경제지원과</p>	<p>○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농지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p>	<p>○ 변경사항 발생 시 이행하겠음</p>	<p>반영</p>
	<p>○ 공사는 허가(협의)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협의)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li> <li>-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의 명의</li> <li>-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li> <li>-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li> </ul>	<p>○ 변경사항 발생 시 이행하겠음</p>	<p>반영</p>
	<p>○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p>	<p>○ 본 공사로 인해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처리 하겠음</p>	<p>반영</p>
	<p>○ 편입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p>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서구청 경제지원과	○ 기존 농로와 농수로등 농업기반시설 편입시 대체 농수로를 설치하는 등 인근농지 진출입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인근농지 진출입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반영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 승인한 때에는 승인 즉시 그 사실을 우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인가 시 승인통보하겠음	반영
서구청 건설과	○ 국·공유 재산(건설행정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준수하겠음	반영
	○ 도로(도로팀) -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한 STA.0+ 160~0+ 237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계획하여 운전자의 주의 환기 및 안전 운행 도모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정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수립 및 시공	○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한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관련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협 의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치수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하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처리 공사시행 및 공사시행 전 우리 구(치수관리팀)와 사전협의</li> <li>- 하수도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부에서 제정(2005.11)한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2005.9)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행 전 사전협의 하겠음</li> <li>○ 하수도시설기준을 설계반영 하였으며, 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적합하게 시공하겠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서구청 건설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전기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의거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등 설치 : 12M 미만 도로</li> <li>○설치 사양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양 반영</li> <li>○정·소등 방식은 우리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방향관리시스템 적용</li> <li>○설치 간격은 위 규정에 의한 조도 계산 후 설치</li> <li>○기타 시공방법 및 사용 자재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용하는 방법 적용</li> </ul> </li> <li>- 도로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시 우리 구(전기팀)와 사전협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도로는 총 폭원 6.0m의 소로로써 관련규정상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국고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부족 및 등주 설치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조명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후 취락지 및 한전전주 조성 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미반영</p>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p>○ 기존 농로와 농수로등 농업기반시설 편입시 대체 농로와 농수로를 설치하는 등 인근농지 진출입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p> <p>○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 즉시 그 사실을 우리부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내역</p> <table border="1" data-bbox="394 443 1429 770"> <thead> <tr> <th colspan="2">전용현황(㎡)</th> <th rowspan="2">농지보전부담금(원)</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신청위치</th> <th>전용면적(㎡)</th> </tr> </thead> <tbody> <tr> <td>공촌동 40(전)</td> <td>382</td> <td rowspan="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로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대상</td> <td rowspan="3">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td> </tr> <tr> <td>공촌동 40-31(전)</td> <td>27</td> </tr> <tr> <td>합계</td> <td>409</td> </tr> </tbody> </table>	전용현황(㎡)		농지보전부담금(원)	비고	신청위치	전용면적(㎡)	공촌동 40(전)	3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로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대상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촌동 40-31(전)	27	합계	409	<p>- .사업부지내 농수로는 없음</p>		
전용현황(㎡)		농지보전부담금(원)	비고																
신청위치	전용면적(㎡)																		
공촌동 40(전)	3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로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대상	소로3-5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촌동 40-31(전)	27																		
합계	409																		
<p>서구청 (공원녹지과)</p>	<p>산지전용</p>	<p>○ 도시계획시설(도로:공촌취락지구 소로3-5호선, 서구청)은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적합한 바,</p> <p>○ 산지전용 시, 인접필지와의 경계침범 등 위법사항에 주의.</p> <p>○ 사업부지내의 지상입목 중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거나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사업시행자가 이식 활용</p> <p>○ 사업시행 과정에서 면적 증·감 등 협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p> <p>○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면제                      - 산지전용 협의 면적 : 79㎡(공익용 79㎡)                      - 산림청 임야(공촌동 20-1번지)는 별도 산림청과 협의</p> <p>○ 복구비 예치 면제 :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유의사항</b></p> <p>1.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전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p> <p>2.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p>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를 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p>	<p>- .지적공사 경계측량 실시후 공사예정.</p> <p>- .부지내 수목은 보상협의예정</p> <p>- .면적변경시 사전협의하겠음</p> <p>- .산림청과는 별도협의 하였음</p>	<p>반영</p>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p>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p> <p>4.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 전에,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 전 1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p> <p>5. 산지전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p> <p>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p> <p>7.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p> <p>8.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산지전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p> <p>9. 중간복구명령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p> <p>10.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p> <p>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p> <p>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p> <p>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20조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p>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p>을 위반한 경우</p> <p>바.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11.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12. 산지전용허가지역 외 인접필지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주변 토지피해 등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발생(민원포함) 시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p> <p>13. 산림으로 존치되는 제외지가 있는 경우 조림(잣나무 등 산림청 경제수종으로 1.8미터 간격으로 실시)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사업지 외 경계침범, 추가벌채, 절성토 등 임야 훼손사항 적발 시 허가 취소는 물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며 고지서 발급 시 1~2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국·공유재산 (건설행정팀)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p> <p>- 협의 대상 토지 : 공촌동 11-20(지목 : 도로, 편입면적 : 107㎡)</p>	-		
서구청 (건설과)	도로 (도로팀)	<p>○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정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및 시공할 것</p>	-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및 시공하겠음.	반영	
	하수 (치수관리팀)	<p>○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하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처리 공사 시행 및 공사시행 전 우리 구(치수관리팀)와 사전협의</p> <p>○ 하수도 관련 세부사항은 환경부에서 제정(2005.11)한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2005.9)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할 것</p>	- .공사 시행전 서구청(치수관리팀)과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전기 (전기팀)	○ 『인천광역시도로조명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 도로조명시설 설치할 것 - 보안등 설치 : 12M 미만 도로 - 설치 사양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양 반영 - 점·소등 방식은 우리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방향관리시스템 적용 - 설치 간격은 위 규정에 의한 조도 계산 후 설치 - 기타 시공방법 및 사용 자재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용하는 방법 적용 ○ 도로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시 우리 구(전기팀)와 사전협의	-. 공사연장(L=66m) 및 설치 공간부족으로 금회계획에서 우선 제외함. 단,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음.	조건부 반영	
서구청 (주차관리 과)	교통안전 시설물	<b>□ 협의의견</b> ① <b>공통사항</b> - 불임 「사무위임조례 개정 및 관리이관에 따른 업무안내」 준수 ② <b>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b>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11.) -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11.) ⇒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상기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상기 규정 또는 동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 불임 : 사무위임조례 개정 및 관리이관에 따른 업무 안내 1부.	-.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및 시공하겠음.	반영	
인천서부 경찰서 (경비교통 과)	교통안전 시설물	○ 취약지구내 도로 개설(소로)에 따른 교통규제심의사항 및 통행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케이티 서인천지사	통신 시설물	○ 통신시설공급이 가능하며 본 구간은 향후 시행사와 협의하여 본 공사 기간내 유관 관로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		
인천도시 가스(주)	가스 시설물	○ 구간 내 당사 도시가스 공급시설물 및 공사계획이 없음	-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상수도 사업본부 (서부수도 사업소)	상수도 시설	<p>○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사업 구간 내 기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급·배수관은 수용가 불편 없도록 이설 조치</li> <li>- 기존관 이설 시 장래 급수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구경으로 설치 검토</li> <li>- 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용관 정비</li> <li>- 원인자 부담금 부과될 수 있음</li> <li>- 공공측량 이행</li> <li>- 환경부 제정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준수</li> <li>- “불임” 상수도 이설승인 및 시공조건 참조</li> <li>- 세부 사항은 공사 착공 전 수도사업소와 별도 협의 이행</li> </ul> <p>○ 상수도 미설치 구간은 장래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수도사업소에서 병행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b>상수도 매설 현황</b></p> 	<p>-공사전 수도사업소와 협의 토록 하겠음.</p>	반영	

관련기관 (부서)	분야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비고
산림청 (서울국유 림관리소)	산지전용, 국유지 무상귀속	<p>귀 구에서 시행하는 공촌 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오니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협 의 조 건 》</p> <p>가.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승인 후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p> <p>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편입면적의 증·감 등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협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하고 변경승인 고시되면 우리 관리소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p> <p>다.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 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옹벽·침사지·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농경지 및 주거·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후 사업 시행</p> <p>라. 본 사업 관련 발생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고, 산림관계법령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절차 이행 후 사업 시행.</p>	<p>-.협의조건에 부합되도록 시행 하겠음.</p>	반영	

1173 □ 공촌 취락지구 소3-2 및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 추가협의의견 :

관련기관	협의 내용	조치 계획	반영여부
서 구 청 경제에너지과	- 우리 구 공촌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공촌취락지구 소 3-2 및 소3-5호선]사업에 대하여 농지전용면적 변동 없으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대상으로 기존 협의 조건 준수하여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협의조건 준수	반영
서 구 청 공원녹지과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 및 소3-5호선) 실시계획 변경(분할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 협의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소 3-2호선 전용면적 △9 m <sup>2</sup> , 소 3-5호선 전용면적 증3m <sup>2</sup> ) 으로 “적합”의견으로 알려드립니다. - 복구공사 완료 후 산지관리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에 의거하여 관련절차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완료 후 이행	반영

## 인가조건(공촌동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법의 절차(인·허가 등)를 이행하여야 함.
2. 하수도 설치 등 공사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시행.
3.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시 인천지방경찰청과 별도 협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완료보고 제출시 증빙서류를 제출
4. 지장물(한전주 등)이설시 소관청(한국전력 등)과 공사전 별도 협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
5. 공사준공시 공인기관의 측량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선 부합여부 확인 후 측량성과도 제출.
6. 본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보상하고 원상복구(환경 친화적 시행)하여야 함.
7.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8.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기간연장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 지시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조건

### ( 시설명 : 도로, 공촌동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

1.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에 필요한 협의서류 등을 첨부(공인기관의 측량결과에 의한 도시계획선 부합여부 측량성과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부여된 협의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 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담당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4.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노면표지 등) 설치 시 인천서부경찰서와 별도 협의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완료보고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조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6.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세륜시설, 방진벽(망)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분리배출·보관·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정 및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8. 집중호우,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재 확보 등 종합적인 방재계획(자재확보, 우·배수관로 점검, 비상연락망체계구축, 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공익 및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가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인가조건의 미 이행 등 기타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 할 경우는 인가권자가 동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709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5. 1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 사회복지시설 : 변경

-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5	사회복지시설	금곡동 729-11	331.0	-	331.0	2012. 1.30	
폐지	D-5	사회복지시설	금곡동 729-11	331.0	감)331.0	-	2012. 1.30	
	계			331.0	감)331.0	-		

■ 공공청사 : 변경

-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4	공공청사	동사무소	마전동 927-4	3,572.1	-	3,572.1	2006. 5.15	
신설	D-5	공공청사	보건소	금곡동 729-11	-	증)331.0	331.0		
	계		2개소		3,572.1	증)331.0	3,903.1		

-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D-5	공공청사 (보건소)	• 공공청사 신설 면적 : 331.0m <sup>2</sup>	• 사회복지시설 사업대상 자연감소 등 요건을 불충족하여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변경.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사회복지시설 : 변경

1) 사회복지시설(D-5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5	사회복지시설	금곡동 729-11	331.0	-	331.0	2012. 1.30	
폐지	D-5	사회복지시설	금곡동 729-11	331.0	감)331.0	-	2012. 1.30	
	계			331.0	감)331.0	-		

■ 업무시설 : 변경

1) 공공업무시설(D-4, D-5용도)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4	공공청사	동사무소	마전동 927-4	3,572.1	-	3,572.1	2006. 5.15	
신설	D-5	공공청사	보건소	금곡동 729-11	-	증)331.0	331.0		
	계		2개소		3,572.1	증)331.0	3,903.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 사회복지시설 : 폐지

1) 사회복지시설(D-5용도) 결정조서 :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5 (사회복지시설)	8가구 30획지	용도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 공공청사용지업무시설 : 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공공청사)	43가구 4획지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공공청사)	43가구 4획지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5 (공공청사)	8가구 30획지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5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기정)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2종 일반주거	공공 청사	D-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4층이하
	사회 복지 시설	D-5	•사회복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주차 장	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 용도)</li> <li>•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li> </ul> </li> <li>•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li> <li>-단독·공동주택(기숙사제외)</li> <li>-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li>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60	300	5층(20m)이하

(변경)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2종 일반주거	공공 청사	D-4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4층이하
		D-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주차 장	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li> <li>•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li> </ul> </li> <li>•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이어야 함</li> <li>-단독·공동주택(기숙사제외)</li> <li>-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 한함)</li>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60	300	5층(20m)이하

##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2)